

의안번호	2212483
의 퇴 인	이학영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3.
추 계 번호	25A4690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3제6항 신설 (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·관리)	외국인투자지역 안의 토지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함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. 다만,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2.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(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.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3제6항 신설 (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·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입주자격 없는 자가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등¹⁾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등을 다른 입주기업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되,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권자²⁾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격 없는 자가 외국인투자지역 내 취득한 토지등을 관리권자가 양수하는 경우, 토지·공장 등의 매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-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관리권자의 토지등 매입액이 될 것이나, 향후 입주자격 없는 자의 취득 및 제3자 양도의 미성사로 관리권자의 양수 대상이 될 재산의 유형 및 거래 건수, 해당 재산의 양도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외국인투자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“단지형”,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하여 지정하는 “개별형”,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

1) 토지·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(현행법 제13조제1항)

2) “관리권자”의 경우 현행법 및 개정안에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, 현행법 제18조의3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를 고려하여 ①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와 ②산업단지 외의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·도지사, ③국가산업단지 내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을 관리권자로 보는 것으로 함

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
제18조의3(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·관리)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,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·도지사가 관리하며,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·도지사가 개발·관리한다.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관리권자 등)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
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-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관리권자
 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 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
 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
 5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(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)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“서비스형”으로 구분되며, 2024년 7월말을 기준으로 단지형 30개, 개별형 76개, 서비스형 3개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있음³⁾

* [참고자료 1]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

- 또한, 확인 가능한 13개 시·도⁴⁾ 중 입주자격 없는 자가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경기도에 6건 있으며, 해당 토지등을 도에서 양수한 사례는 없음(2026.1.5. 기준)

* [참고자료 2]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(경기도)
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격 없는 자가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등을 다른 입주기업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되,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3) 자료: Invest KOREA 홈페이지
<https://www.investkorea.org/ik-kr/cntnts/i-2531/web.do>

4) 17개 시·도 중 서울특별시, 충청남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미회신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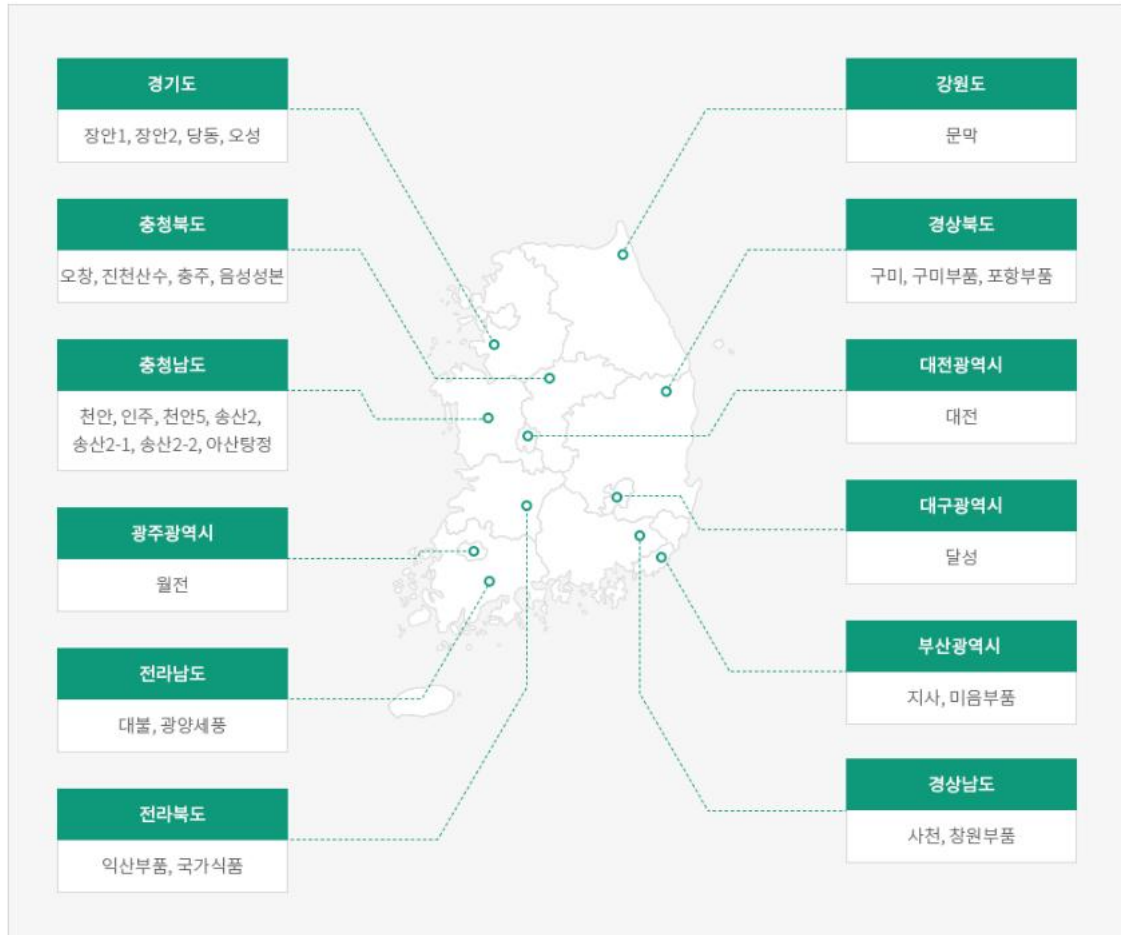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 1]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

①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

(2024년 7월말 기준)



자료: Invest KOREA 홈페이지

<https://www.investkorea.org/ik-kr/cntnts/i-2531/web.do>

[참고자료 2]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(경기도)

연번	기업명	취득경위	조치내용
1	(주)△△콘	경매낙찰	변상금 부과(채납중)
2	양□□ (개인)	공매낙찰	변상금 부과(채납중)
3	(주)건◇	소유권이전	변상금 부과(채납중) 행정대집행(채납중)
4	(주)○○플러스	공매낙찰	변상금 부과(채납중)
5	(주)▽▽▽▽테크	공매낙찰	변상금 부과(채납중)
6	(주)디◎◎	경매낙찰	변상금 부과(채납중)

주: 2026.1.5. 기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업의 현황
자료: 경기도